

[서식 예] 공갈죄

고 소 장

고소인 0 0 0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전화번호: ○○○ - ○○○○)

피고소인 △ △ △

○○시 ○구 ○길 ○○ (전화번호: ○○○ - ○○○○)

주민등록번호 : 111111 - 1111111

고소취지

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2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고 소 사 실

- 1.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,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20〇〇. ○.경 강남의 한 캬바레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었습니다.
- 2. 그런데 피고소인은 2000. O. O. OO:OO경 OO시 OO구 OO길에 있는 OOO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고는 피고소인에게 "돈 200만 원만 빌려 달라"고 하면서 "만일 빌려주지 않으면 정교사실을 남편에게 알려버리겠다"는 등의 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.
- 3. 이에 고소인은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○○:○○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다시 만나 금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



니다.

입 증 방 법

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.

2000년 0월 0일

위 고소인 ㅇ ㅇ ㅇ (인)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		
	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	소추요건	※ 아래(2) 참조
	(※ 아래(1)참조)		(형법 354조, 328조)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350조
범죄성립 요 건	·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		
	·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		
	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		
형 량	• 10년 이하의 징역		
	· 2,000만원 이하의 벌금		
	(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: 형법 353조)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(항고)		
	· 근거 : 검찰청법 10조		
	・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		
	(재정신청)		
	・근거:형사소송법 제260조		
	•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		
	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		
	(헌법소원)		
	·근러 : 헌법재판소법 68조		
	·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		
	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		
	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		
	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 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

※ (2)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

- 1. 직계혈족 ,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
- 2.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
- 3.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